

## 〈자료〉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 오물청소법 시행령 개정령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설계심사위원회규정 시행규칙중 개정령
- 1983년도 정부노임단기기준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1982. 12. 3 개정)

도시계획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를 각각 제 7 조 내지 제 9 조로 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 5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 1 호서식 및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보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한 경우 이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의 내용

2. 법 제 13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후 고시한 지형도의 내용

3. 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고시의 내용

4. 법 제 2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자가 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에 대한 승인의 내용(설계도서등을 제외한다)

5.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등 인가의 내용(설계도서등을 제외한다)

제 4 조 (조사·측량사항등) ① 영 제 11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2.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전망

3.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4.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5. 도시계획과 관련된 재반계획 및 개발상황 ②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조사·측량할 사항은 영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할 사항중 당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 5 조 및 제 6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조사분석사항) 법 제 15 조 제 2 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 6 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영 제 12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교육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유치원을 말한다.

제 7 조 (종전의 제 2 조) 제 1 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 4 호 사목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 5 호 다목중 “제 3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를 “제 8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 6 호 나목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 “다목 및 라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소재 기존 공장시설을 그 부설교육훈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 7 조 (종전의 제 2 조) 제 2 항중 “제 3 조”를 “제 8 조”로, 별지 제 4 호서식”을 “별지 제 3 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 3 항중 “시행령”을 “영”으로,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 8 조 (종전의 제 3 조) 본문중 “시행령”을 “영”으로, 동조 제 10 호 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타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타목”으로, 동조 제 11 호 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으로, 동조 제 13 호 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으로, 동조 제 14 호 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거목” “너목” 및 “러목 내지 허목”과 동조동항 제 6 호 “바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거목·너목 및 러목 내지 허목과 동조동항 제 6 호 바목”으로 한다.

제 9 조 (종전의 제 4 조) 본문중 “시행령”을 “영”으로, 동조 제 2 호 중 “300%”를 “300퍼센트”로 한다.

제 10 조 내지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 (시행자지정의 공고) 법 제 2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경우 또는 동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 2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법 제 23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조 (사업시행허가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증 표)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 1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   |   |             |
|---|---|-------------|
| 제   | 호 |             |
| 신 분 증   |   |             |
| 성명<br>주민등록번호  |   | (사진)        |
| 주소  |   | 2cm × 2.5cm |
| <p>위 사람은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br/>측량등을 할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p> |   |             |
| 유효기간 19 . . . . 부터<br>19 . . . . 까지                         |   |             |
| 년   | 월 | 일           |
| 시   | 장 |             |
| 군   | 수 | (①)         |

[별지 제4호서식]

|  |              |          |
|--|--------------|----------|
| 제 호  |              | 검사공무원신분증 |
| 소 속 :  |              |          |
| 직 위 :  | (사 진)        |          |
| 성 명 :  | 2cm × 2. 5cm |          |
| 주민등록번호 :   |              |          |
| <p>위 사람은 도시계획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사업에 관한 업무 또는 회계를 겸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p> |              |          |
| 년  | 월            | 일        |
| 건설부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          |
| 도지사  |              | (1)      |

|   |    |               |
|---|----|---------------|
| 제   | 호  |               |
| 허   | 가  | 증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위치또는장소 :  |    |               |
| 허가내용 :  |    |               |
| 기   | 간: | 19 . . . . 부터 |
|   |    | 19 . . . . 까지 |
|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등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출입등을 허가함 |    |               |
| 19 . . . .  |    |               |
| 시장  |    |               |
| (인)   |    |               |
| 군수  |    |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증개정령(1982. 12. 7 개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안의 건축물)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구역 또는 기지안의 건축물로

서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 당해 구역 또는 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1982년 8월31일”을 “1983년 1월31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주요구조별가중치 및 지붕구조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별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 및 용도지역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주요구조별가중치 및 지붕구조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별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 및 용도지역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를 모두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10분의 9로 한다.”를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각각의 10분의 7로 한다.”로 한다.  
[별표] 과태료산정기준중 2. 규모별가중치란의 비교란“( )안의 것은 비주거용·무허가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를“( )안의 것은 비주거용 무허가건축물과 주거용 위법시공건축물(16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표중 3. 구조별가중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구조별 가중치

#### 가. 주요구조별 가중치

| 번호 | 주 요 구 조 별                         | 가중치  |
|----|-----------------------------------|------|
| 1  | 석조                                | 1.00 |
| 2  | 철근콘크리트조<br>철골철근콘크리트조<br>피·씨(P·C)조 | 0.80 |
| 3  | 철골조<br>보강콘크리트블록조                  | 0.75 |
| 4  | 연와조                               | 0.70 |
| 5  | 시멘트벽돌조                            | 0.55 |
| 6  | 목조                                | 0.50 |
| 7  | 시멘트블록조                            | 0.45 |
| 8  | 석회 및 흙벽돌조<br>흙벽돌조                 | 0.25 |
| 9  | 돌담 및 토담조                          | 0.15 |

#### 나. 지붕구조별 가중치

| 번호 | 지붕구조별     | 가중치  |
|----|-----------|------|
| 1  | 스라브       | 1.00 |
| 2  | 토기와<br>유리 | 0.75 |

|   |       |      |
|---|-------|------|
| 3 | 시멘트기와 | 0.70 |
| 4 | 스레이트  | 0.65 |
| 5 | 함석    | 0.60 |
| 6 | 자연석   | 0.55 |
| 7 | 초가    | 0.35 |
| 8 | 기타    | 0.15 |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납부한 과태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납부한 과태료의 금액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과태료의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으로 다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改正理由

종전에는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에 있는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은 모두 法에 의한 整理對象에서 제외되어 陽性化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軍事施設保護法이나 海軍基地法 및 空軍基地法이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에서도 建築物의 新築 및 増築을 관할部隊長등과의 協議를 거쳐 市長·郡守가 許可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區域 또는 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의 陽性化를 일률적으로 禁止하는 것은 均衡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 중 整理對象에서 제외되는 建築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過怠料算定基準을 調整하여 國民의 負擔을 輕減하도록 하며,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 主要骨子

가.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 중 整理對象에서 제외되는 建築物의 범위를 市長·郡守가 관할部隊長등과의 協議를 거쳐 同 區域 또는 基地의 指定目的에 誤背되는 것으로 인정한 建築物로 限定함(令 第2條의 2).  
나. 特定建築物 중 無許可建築物 및 國家施策事業으로 建築 또는 改良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작성하는 現場調查書로 申告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그 現場調查書의 作成期限을 1982年 8月 31日에서 1983年 1月 31日로 延長함(令 第5條 第3項).  
다. 特定建築物에 대한 竣工檢查畢證을 交付할 때에 賦課하는 過怠料의 算定基準中 構造別加重值를 下向調整되며, 종전의 基準에 의하여 이미 納付한 過怠料와 새로운 基準에 의한 過怠料와의 差額은 이를 遠給하도록 함(令 別表 및 附則第 2項).

〈법제처 제공〉

## 오물청소법시행령개정령(1982. 12. 10개정)

오물청소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오물청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물처리담당요원의 교육) ① 환경청장은 오물처리담당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오물투기금지구역) 법 제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물투기금지구역”이라 함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미터 이내의 해역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3. 육로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청장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4.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청장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제4조** (오물처리업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 법 제11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지역
2. 주한 외국군의 주둔지역

**제5조**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역등)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지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 우수·오수분리식하수도가 설치된 지역과 기타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의 규모는건축연면적(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천6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자의 영업지역)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는자의 영업지역은 당해 동록관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청장의 권한중 매립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승인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汚物清掃法施行令 改正理由

汚物清掃法이改正(1982. 4. 2. 法律 第3, 554號)됨에 따라 그施行에 필요한事項을 정하려는 것임.

#### ◇ 主要骨子

- 가. 汚物處理擔當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이들 要員에 대하여 필요한 教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
- 나.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對象地域과 建物 등의 規模를 정함(令 第5條).
- 다. 粪尿淨化槽 設計·施工業者の 營業地域을 登錄官廳의 官轄區域으로 하여 이들 業體가 設計·施工한 施設에 대하여 事後管理의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함(令 第6條).

〈법제처 제공〉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개정82. 12. 18)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용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의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를 희망하는자가 없거나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자의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1항 단서중 “및 제5조”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 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세목중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벽돌·시멘트블록·시멘트 기와) 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의 다. 기타 시설란총 “3,300평방 미터이상.”을 “3천300제곱미터(보일러실을 포함하여 99제곱미터이상의 증기양생실과 1톤 이상의 보일러 1 대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천980제곱미터)이상,”으로, “1,650평방미터”를 “1천650제곱미터”로 하고, 동 표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7]중 “평방센티미터”를 “제곱센티미터”로 하고, 동표 제17호란중 “평방미터이상”을 “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

| 도서의종류 | 축 칙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위치도   | 임 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지의 위치(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 도면에 표시한다)</li> <li>2. 대지인근에 학교·의료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판매시설·공중목욕탕·공공운동장이 있을 경우 그 위치</li> </ol>                  |
| 현황도   | 임 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지의 위치 및 경계</li> <li>2. 대지안의 도시계획시설</li> <li>3. 토지이용 및 여러시설물의 현황</li> <li>4. 도로망</li> <li>5. 주요경관요소</li> <li>6. 자연지형등</li> </ol> |

|         |                                      |  |
|---------|--------------------------------------|--|
|         |                                      | 7. 소음발생원(철도·고속도로·공장등)의 위치  |
| 배치도     | $\frac{1}{600} \sim \frac{1}{1,200}$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척 및 방위</li> <li>2.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li> <li>3.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li> <li>4.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li> <li>5. 안내표지판</li> <li>6. 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li> <li>7.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li> <li>8. 담·옹벽·우물·안내표지판·오물정화조·배수시설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위치</li> <li>9. 주차시설</li> </ol> |
| 대지조성계획도 | 임 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척 및 방위</li> <li>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 계획</li> <li>3. 대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li> <li>4. 대지조성표고</li> <li>5.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li> </ol>   |
| 조경도     | $\frac{1}{50} \sim \frac{1}{1,200}$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 척</li> <li>2.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li> <li>3. 수종·수형·수목의 규격</li> <li>4.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시설의 종류·수량·위치 등을 포함한다)</li> <li>5. 휴게시설</li> <li>6. 기타 조경시설물의 배치</li> </ol>  |
| 각층평면도   | $\frac{1}{50} \sim \frac{1}{200}$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 척</li> <li>2. 각실의 용도</li> <li>3.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li> <li>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li> <li>5. 계단의 위치 및 폭</li> <li>6. 복도의 위치 및 폭</li> <li>7. 승강기 및 승강상의 위치 및 폭</li> <li>8. 전물의 폭 길이</li> </ol>   |
| 입면도     | $\frac{1}{20} \sim \frac{1}{200}$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 척</li> <li>2.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li> <li>3. 지붕·천정·벽·기둥·바닥의 구조(단열재료 및 그 열판류율의 값을 포함한다)</li> </ol>  |

|     |  |
|-----|--|
|     | 4. 세대간 사잇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값을 포함한다)<br>5.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br>6.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br>7. 난간의 구조 및 높이<br>8.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br>9.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br>10. 낙수구<br>11. 우편함<br>12. 다크스트슈트·저장소 및 상부 악취배기시설 |
| 마감표 | 바닥·벽·천정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

|          |    |   |
|----------|----|---|
| 창호도      | 임의 | 1. 축적<br>2. 창문의 재료 및 규격   |
| 소방및피난설비도 | 임의 | 소방법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
| 냉·난방설비도  | 임의 | 1. 축적<br>2. 배관계통도<br>3. 냉·난방시설의 위치<br>4.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조절장치                                   |
| 전기설비도    | 임의 | 1. 세대별 전력용량<br>2. 적산전력계의 위치<br>3. 배선도<br>4. 전등 및 콘센트등의 위치<br>5. 대지안의 옥외전선<br>6. 보안등<br>7. 공청안테나 |

### 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1983. 1. 6 개정)

설계 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기본설계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규정 제 2 조제 3 호의 기본설계의 내용과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나목의 특수시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판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제 1 항중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를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조 제 2 항제 1 호”로 하고, 동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물의 평면계획·배치, 구조선택 및 단면결정 등의 타당성 여부

제 3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할 대형공사에 대한 대안입찰의 타당성 여부

2.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원안설계와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의 기준 및 세부지침 등

나. 공종대체의 타당성 여부

다. 기본방침(기본계획, 설계기준 및 세부지침 등)과의 합치 여부

라. 원안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지는 가의 여부

마.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의 합치 여부

제 3 조 제 3 항중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를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로 하고,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에 관한 기본계획·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등

나. 기본계획·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등과의 합치여부

다.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의 합치 여부

제 3 조 제 4 항중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를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로 하여 이를 제 5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심의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설계심의 요청서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공사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정하여 공고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심의하여야 할 공사계획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 월 20 일까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을 제 4 항으로 하여,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설계도서를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개최 전에 분야별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검토한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위원장 또는 지방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자료의 보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된 설계도서는 심의완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공평가등) ① 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시공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각각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단원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로 시공에 대한 개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공사와 시공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를 거친 공사로 한다.

④ 평가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위원회의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의 확인
2. 공사관리상태의 확인
3.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4. 설계의 변경 및 그 처리의 확인
5. 현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평가단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⑥ 평가단의 평가는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평가단의 단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공이 완료된 후에 당해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83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

(재무부회계1210-3992호 83. 1. 1 시행)

#### ● 적용요령

1. 이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 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2.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노임단가는 기본금액을 표시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상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 노임단가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 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다.
6. 이 노임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한다.
7. 도서지역 노임단가의 적용지역은 도서지역 일원(제주도, 울릉도포함)으로 한다.
8. 이 기준은 1983. 1. 1. 부터 적용한다.

#### 1. 공사부문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공사부문 | 1    | 갱       | 부 7,800 |
|      | 2    | 도 목 수   | 11,430  |
|      | 3    | 조 선 목 공 | 9,80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공사부문 | 4    | 전축목공          | 9,410  |
|      | 5    | 형틀목공          | 9,010  |
|      | 6    | 창호목공          | 9,600  |
|      | 7    | 동발목공(터널)      | 9,620  |
|      | 8    | 철골공           | 9,300  |
|      | 9    | 철공            | 8,810  |
|      | 10   | 철근공           | 8,930  |
|      | 11   | 제판공           | 9,210  |
|      | 12   | 강판공           | 8,680  |
|      | 13   | 대장공           | 7,230  |
|      | 14   | 샷다공           | 9,700  |
|      | 15   | 샷슈공           | 9,360  |
|      | 16   | 절단공           | 8,100  |
|      | 17   | 석공            | 10,020 |
|      | 18   | 활석공           | 10,180 |
|      | 19   | 특수비계공(15m 이상) | 10,750 |
|      | 20   | 비계공           | 9,500  |
|      | 21   | 동발공(터널)       | 9,680  |
|      | 22   | 제철축로공         | 15,470 |
|      | 23   | 조적공           | 8,960  |
|      | 24   | 벽돌(부력)제작공     | 7,960  |
|      | 25   | 연돌공           | 8,350  |
|      | 26   | 미장공           | 9,240  |
|      | 27   | 방수공           | 8,750  |
|      | 28   | 타일공           | 9,360  |
|      | 29   | 줄눈공           | 8,560  |
|      | 30   | 연마공(손갈기)      | 8,530  |
|      | 31   | 연마공(기계갈기)     | 8,690  |
|      | 32   | 콘크리트공         | 7,910  |
|      | 33   | 양생공           | 6,610  |
|      | 34   | 바이브레타공        | 7,450  |
|      | 35   | 보이라공          | 9,870  |
|      | 36   | 냉동공           | 8,590  |
|      | 37   | 배관공           | 8,670  |
|      | 38   | 온돌공           | 8,750  |
|      | 39   | 위생공           | 8,290  |
|      | 40   | 보온공           | 8,080  |
|      | 41   | 도장공           | 8,990  |
|      | 42   | 계령공           | 6,320  |
|      | 43   | 내장공           | 8,790  |
|      | 44   | 돛자리공          | 8,070  |
|      | 45   | 도배공           | 8,900  |
|      | 46   | 아스타일공         | 9,410  |
|      | 47   | 개와공           | 9,400  |
|      | 48   | 스래트공          | 8,780  |
|      | 49   | 화약취급공         | 11,420 |
|      | 50   | 착암공           | 9,270  |
|      | 51   | 보안공           | 6,760  |
|      | 52   | 포장공           | 8,560  |
|      | 53   | 포설공           | 9,370  |
|      | 54   | 궤도공(철도)       | 9,88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공사부문 | 55   | 궤도공(일반)   | 6,900  |
|      | 56   | 궤도용접공(철도) | 11,000 |
|      | 57   | 잠수부(4인조)  | 50,990 |
|      | 58   | 잠함공       | 12,330 |
|      | 59   | 보링공(지질조사) | 7,990  |
|      | 60   | 우물공       | 8,000  |
|      | 61   | 영림기사      | 10,790 |
|      | 62   | 조원공       | 8,780  |
|      | 63   | 벌채지도인부    | 6,880  |
|      | 64   | 벌목부       | 7,630  |
|      | 65   | 조림인부      | 7,770  |
|      | 66   | 프랜트기계설치공  | 11,970 |
|      | 67   | "용접공      | 9,790  |
|      | 68   | "배관공      | 9,940  |
|      | 69   | "제판공      | 10,150 |
|      | 70   | 시공측량사     | 11,260 |
|      | 71   | 시공측량사조수   | 6,380  |
|      | 72   | 측부        | 5,280  |
|      | 73   | 검조부       | 4,440  |
|      | 74   | 송전전공      | 15,580 |
|      | 75   | 배전전공      | 12,540 |
|      | 76   | 프랜트전공     | 11,480 |
|      | 77   | 내선전공      | 9,910  |
|      | 78   | 특고압케이블전공  | 16,100 |
|      | 79   | 고압케이블전공   | 13,020 |
|      | 80   | 저압케이블전공   | 10,970 |
|      | 81   | 철도신호공     | 9,930  |
|      | 82   | 제장공       | 9,550  |
|      | 83   | 전기공사기사1급  | 15,320 |
|      | 84   | "2급       | 11,600 |
|      | 85   | 통신외선공     | 11,020 |
|      | 86   | "설비공      | 10,290 |
|      | 87   | "내선공      | 9,810  |
|      | 88   | "케이블공     | 13,110 |
|      | 89   | 무선안테나공    | 12,690 |
|      | 90   | 통신기사1급    | 15,670 |
|      | 91   | "2급       | 12,720 |
|      | 92   | 통신기능사     | 10,950 |
|      | 93   | 도심장       | 11,350 |
|      | 94   | 십장        | 8,740  |
|      | 95   | 목도        | 9,400  |
|      | 96   | 연돌소제부     | 6,450  |
|      | 97   | 숙련공의조공    | 6,330  |
|      | 98   | 특별인부      | 7,210  |
|      | 99   | 보통인부      | 5,290  |
|      | 100  | 여자인부      | 3,420  |
|      | 101  | 중기운전기사    | 10,010 |
|      | 102  | 운전사(운반차)  | 9,430  |
|      | 103  | "(기계)     | 8,890  |
|      | 104  | 중기운전조수    | 6,530  |
|      | 105  | 고급선원      | 11,71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 종 명           | 단 가    |
|------|------|-----------------|--------|
| 공사부문 | 106  | 보 통 선 원         | 7,840  |
|      | 107  | 선 부             | 7,260  |
|      | 108  | 준 설 선 선 장       | 12,320 |
|      | 109  | " 기관장           | 11,460 |
|      | 110  | " 기관사           | 9,310  |
|      | 111  | " 운전사           | 9,110  |
|      | 112  | " 전기사           | 8,940  |
|      | 113  | 사 공(배포함)        | 10,920 |
|      | 114  | 기 계 설 치 공       | 8,910  |
|      | 115  | 기 계 공           | 8,630  |
|      | 116  | 선 반 공           | 8,440  |
|      | 117  | 정 비 공           | 9,180  |
|      | 118  | 벨트콘 베어 작업공(남)   | 6,640  |
|      | 119  | " (여)           | 3,500  |
|      | 120  | 현 도 사           | 10,940 |
|      | 121  | 제 도 사           | 9,170  |
|      | 122  | 미 술 사           | 7,270  |
|      | 123  | 시 험 사 1 급       | 12,340 |
|      | 124  | 시 험 사 2 급       | 10,750 |
|      | 125  | 시 험 사 3 급       | 9,070  |
|      | 126  | 시 험 사 4 급       | 8,020  |
|      | 127  | 시 험 보 조 수       | 5,870  |
|      | 128  | 비 파 괴 시 험 사     | 9,530  |
|      | 129  | 안 전 관 리 기 사 1 급 | 13,860 |
|      | 130  | 안 전 관 리 기 사 2 급 | 9,700  |
|      | 131  | 마 부(우 마 차 포 함)  | 16,330 |
|      | 132  | 제 재 공           | 9,320  |
|      | 133  | 유 리 공           | 9,110  |
|      | 134  | 합 석 공           | 8,680  |
|      | 135  | 용 접 공           | 8,910  |
|      | 136  | 리 벳 공           | 10,280 |
|      | 137  | 빠 데 도 포 공       | 7,990  |
|      | 138  | 루 핑 공           | 7,730  |

#### ● 도서지역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 종 별      | 단 가    |
|------|------|------------|--------|
| 공사부문 | 1    | 건 축 목 공    | 11,980 |
|      | 2    | 형 틀 목 공    | 10,400 |
|      | 3    | 철 근 공      | 9,420  |
|      | 4    | 조 적 공      | 9,370  |
|      | 5    | 미 장 공      | 11,010 |
|      | 6    | 방 수 공      | 10,050 |
|      | 7    | 타 일 공      | 11,660 |
|      | 8    | 연 마 공(기 계) | 10,530 |
|      | 9    | 콘 크 리 트 공  | 8,580  |
|      | 10   | 화 약 취 급 공  | 13,330 |
|      | 11   | 착 암 공      | 10,760 |
|      | 12   | 포 장 공      | 10,210 |
|      | 13   | 잠 수 부(4인조) | 62,710 |
|      | 14   | 특 별 인 부    | 7,97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 종 명       | 단 가    |
|-----|------|-------------|--------|
|     | 15   | 보 통 인 부     | 6,600  |
|     | 16   | 여 자 인 부     | 4,120  |
|     | 17   | 중 기 운 전 기 사 | 12,090 |
|     | 18   | 운 전 수(운반차)  | 9,740  |
|     | 19   | 중 기 운 전 조 수 | 8,160  |
|     | 20   | 고 급 선 원     | 11,110 |
|     | 21   | 보 통 선 원     | 7,780  |

#### 2. 제조부문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 종 명       | 단 가   |
|------|------|-------------|-------|
| 제조부문 | 1    | 기 계 설 계 사   | 8,670 |
|      | 2    | 회로 설 계 사    | 9,770 |
|      | 3    | 제 도 사       | 6,280 |
|      | 4    | 현 도 사       | 6,180 |
|      | 5    | 마 킹 공       | 4,780 |
|      | 6    | 철 물 재 단 사   | 6,680 |
|      | 7    | 철 물 절 단 공   | 4,970 |
|      | 8    | 산 소 절 단 공   | 5,340 |
|      | 9    | 회 전 쇠 톱 공   | 4,880 |
|      | 10   | 금 속 쇠 톱 공   | 4,290 |
|      | 11   | 모 형 절 단 공   | 4,560 |
|      | 12   | 가 위 절 단 공   | 3,340 |
|      | 13   | 단 금 절 단 공   | 4,320 |
|      | 14   | 초 음 파 절 단 공 | 4,010 |
|      | 15   | 방 전 절 단 공   | 5,300 |
|      | 16   | 사 링 공       | 4,940 |
|      | 17   | 프 레 스 공     | 4,440 |
|      | 18   | 프 레 스 조 공   | 3,470 |
|      | 19   | 밀 링 공       | 5,070 |
|      | 20   | 쉐 파 공       | 5,200 |
|      | 21   | 흡 핑 공       | 4,900 |
|      | 22   | 로 구 로 공     | 4,620 |
|      | 23   | 드 릴 공       | 4,600 |
|      | 24   | 태 핑 공       | 4,160 |
|      | 25   | 보 링 공       | 5,750 |
|      | 26   | 자 동 선 반 공   | 5,520 |
|      | 27   | 수 동 선 반 공   | 5,300 |
|      | 28   | 프 레 나 공     | 5,270 |
|      | 29   | 스 롯 타 공     | 5,420 |
|      | 30   | 볼 반 공       | 4,460 |
|      | 31   | 강 판 공       | 4,700 |
|      | 32   | 판 금 공       | 5,200 |
|      | 33   | 합 석 공       | 5,880 |
|      | 34   | 문 자 조 작 기 공 | 4,970 |
|      | 35   | 모 형 조 작 기 공 | 5,045 |
|      | 36   | 3 본 로 라 공   | 5,600 |
|      | 37   | 벤 텅 머 쉰 공   | 4,370 |
|      | 38   | 절 곡 공       | 4,790 |
|      | 39   | 수 동 교 정 공   | 5,070 |
|      | 40   | 바 란 스 머 쉰 공 | 5,31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제조부문 | 41   | 요철공     | 4,160 |
|      | 42   | 열처리공    | 5,160 |
|      | 43   | 용해공     | 5,140 |
|      | 44   | 금형공     | 5,820 |
|      | 45   | 목형공     | 5,980 |
|      | 46   | 주물공     | 5,190 |
|      | 47   | 다이카스트공  | 5,160 |
|      | 48   | 단조공     | 5,660 |
|      | 49   | 압연공     | 5,650 |
|      | 50   | 인발공     | 4,440 |
|      | 51   | 압출공     | 5,340 |
|      | 52   | 합금공     | 5,160 |
|      | 53   | 제금공     | 4,710 |
|      | 54   | 연화공     | 5,380 |
|      | 55   | 신선공     | 4,230 |
|      | 56   | 연선공     | 3,760 |
|      | 57   | 절연공     | 4,410 |
|      | 58   | 연합공     | 4,550 |
|      | 59   | 대연공     | 4,030 |
|      | 60   | 테이핑공    | 4,730 |
|      | 61   | 케이블전조공  | 4,060 |
|      | 62   | 케이블제조공  | 3,880 |
|      | 63   | 피복공     | 4,280 |
|      | 64   | 권축공     | 4,010 |
|      | 65   | 구목공     | 4,340 |
|      | 66   | 리벳공     | 4,210 |
|      | 67   | 전기용접공   | 5,030 |
|      | 68   | 가스용접공   | 5,250 |
|      | 69   | 땀납용접공   | 4,310 |
|      | 70   | 접점공     | 3,600 |
|      | 71   | 권선공     | 4,250 |
|      | 72   | 랩핑공     | 3,690 |
|      | 73   | 레이저광선공  | 6,630 |
|      | 74   | 양극처리공   | 3,470 |
|      | 75   | 합성수지피막공 | 4,750 |
|      | 76   | 진공침적합침공 | 3,730 |
|      | 77   | 고체연료제조공 | 3,950 |
|      | 78   | 일반화학공   | 5,460 |
|      | 79   | 일반화학조공  | 4,550 |
|      | 80   | 조성화학공   | 5,500 |
|      | 81   | 조성화학조공  | 4,340 |
|      | 82   | 고무제품제조공 | 3,930 |
|      | 83   | 도자기및애자공 | 5,870 |
|      | 84   | 요업공     | 4,960 |
|      | 85   | 유리제품제조공 | 5,210 |
|      | 86   | 그라인다공   | 4,290 |
|      | 87   | 지석연마공   | 4,660 |
|      | 88   | 사지공     | 3,340 |
|      | 89   | 세척공     | 4,310 |
|      | 90   | 빠후공     | 5,160 |
|      | 91   | 콤파운드연마공 | 5,03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별         | 단가    |
|------|------|-------------|-------|
| 제조부문 | 92   | 전해연마공       | 4,760 |
|      | 93   | 화학연마공       | 4,630 |
|      | 94   | 호닝공         | 4,810 |
|      | 95   | 도장공(취부)     | 5,170 |
|      | 96   | 도장공(붓칠)     | 3,950 |
|      | 97   | 목공도장공       | 5,300 |
|      | 98   | 빠데도포공       | 4,710 |
|      | 100  | 배선공         | 5,980 |
|      | 101  | 전기도금공       | 4,080 |
|      | 102  | 침적도금공       | 4,270 |
|      | 103  | 사출공(인젝션)    | 4,220 |
|      | 104  | 성형공(몰딩)     | 4,530 |
|      | 105  | 압출공(인스트루션)  | 4,910 |
|      | 106  | 제재조공        | 5,530 |
|      | 107  | 제재조공        | 3,840 |
|      | 108  | 정착공         | 3,860 |
|      | 109  | 제재기계운전공     | 5,280 |
|      | 110  | 목재건조기제조공    | 4,410 |
|      | 111  | 합판제조공       | 3,160 |
|      | 112  | 가구공         | 5,200 |
|      | 113  | 목공및유리공      | 5,420 |
|      | 114  | 벨트콘베어작업공(남) | 5,580 |
|      | 115  | 벨트콘베어조립공(여) | 3,770 |
|      | 116  | 부품조립공       | 3,690 |
|      | 117  | 전자제품조립공     | 3,370 |
|      | 118  | 약전기제조립공     | 4,950 |
|      | 119  | 강전기제조립공     | 5,650 |
|      | 120  | 경기제조립공      | 4,420 |
|      | 121  | 중기제조립공      | 5,540 |
|      | 122  | 부품시험공       | 4,980 |
|      | 123  | 제품시험공       | 5,230 |
|      | 124  | 부품조정공       | 4,490 |
|      | 125  | 제품조정공       | 4,640 |
|      | 126  | 부품검사공       | 4,690 |
|      | 127  | 제품검사공       | 3,950 |
|      | 128  | 물품포장공       | 3,640 |
|      | 129  | 철강포장공       | 4,700 |
|      | 130  | 도안공         | 7,290 |
|      | 131  | 제본공(남)      | 5,440 |
|      | 132  | "(여)        | 3,400 |
|      | 133  | 공판인쇄공       | 6,010 |
|      | 134  | 옵셋인쇄공       | 6,200 |
|      | 135  | 활판인쇄공       | 5,780 |
|      | 136  | 사진조판공       | 6,710 |
|      | 137  | 인쇄동판제조공     | 5,920 |
|      | 138  | 인쇄연판제조공     | 5,420 |
|      | 139  | 식자공         | 5,750 |
|      | 140  | 문선공         | 5,740 |
|      | 141  | 필경사         | 7,510 |
|      | 142  | 공판타자수       | 6,050 |
|      | 143  | 프린트인쇄공      | 5,51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 144  | 교정사                | 7,240 |
|     | 145  | 지류재단공              | 5,000 |
|     | 146  | 직물재단사              | 8,300 |
|     | 147  | 직물재단공              | 3,820 |
|     | 148  | 상침공                | 3,190 |
|     | 149  | 하침공                | 2,660 |
|     | 150  | 이본침공               | 3,830 |
|     | 151  | 오바로그공              | 3,000 |
|     | 152  | 깅검기공               | 2,810 |
|     | 153  | 인타로그공              | 2,810 |
|     | 154  | 스냅공                | 2,610 |
|     | 155  | 연단공                | 3,180 |
|     | 156  | 직포공(여)             | 3,480 |
|     | 157  | 침염공                | 3,320 |
|     | 158  | 연사공(여)             | 3,360 |
|     | 159  | 정경공(여)             | 3,200 |
|     | 160  | 염직공(여)             | 4,240 |
|     | 161  | 관전공(여)             | 2,930 |
|     | 162  | 재봉기계사              | 4,920 |
|     | 163  | 방직기계보전공            | 5,750 |
|     | 164  | 편직공                | 3,580 |
|     | 165  | 횡편공                | 5,300 |
|     | 166  | 제화공                | 4,300 |
|     | 167  | 피혁공                | 3,120 |
|     | 168  | 빵, 과자 및 식품류 제조공(남) | 4,620 |
|     | 169  | "(여)               | 2,910 |
|     | 170  | 조리사                | 4,880 |
|     | 171  | 영양사                | 6,090 |

| 부문별  | 직종번호 | 직종명      | 단가     |
|------|------|----------|--------|
| 제조부문 | 172  | 남자인부     | 4,320  |
|      | 173  | 여자인부     | 2,670  |
|      | 174  | 십장       | 6,130  |
|      | 175  | 양곡처리공(남) | 6,200  |
|      | 176  | 콤퓨터운전사   | 6,250  |
|      | 177  | 기계기술공    | 6,730  |
|      | 178  | 보선공      | 6,080  |
|      | 179  | 차량정비공    | 6,680  |
|      | 180  | 기계정비공    | 6,150  |
|      | 181  | 안전관리사    | 9,250  |
|      | 182  | 품질관리사    | 10,210 |
|      | 183  | 품질관리공    | 4,870  |
|      | 184  | 다듬질공     | 4,490  |
|      | 185  | 충기운전사    | 6,450  |
|      | 186  | 콤퓨터S/W기사 | 13,010 |
|      | 187  | "H/W기사   | 13,910 |
|      | 188  | 통신기계조립공  | 3,500  |
|      | 189  | 콤퓨터키편치공  | 5,110  |
|      | 190  | 통신외선공    | 6,670  |
|      | 191  | 통신내선공    | 6,110  |
|      | 192  | 무선안테나공   | 6,250  |
|      | 193  | 통신기사1급   | 12,620 |
|      | 194  | 통신기사2급   | 10,070 |
|      | 195  | 통신기능사    | 5,660  |
|      | 196  | 목제포장공    | 4,560  |
|      | 197  | 양곡처리공(여) | 3,530  |
|      | 198  | 목도       | 4,780  |

## 건축설계보조원취업안내

본회 서울지부에서는 회원사무소에서 일할 설계보조원 취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 경력서 각 1통
- 마감 / 매월 20일 까지
- 제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사무국

TEL 723-6258·8059